

제229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19. 10. 4.

기획행정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 1561 호
----------	----------

2019.10.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9. 9. 19.
- 나. 회부일자 : 2019. 9. 23.
- 다. 상정일자 : 2019. 10. 1.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김옥희 행정국장

나. 개정이유

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자원봉사자증 도입 등 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 신설)
-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(부칙 제2조 신설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2019년 예산반영
- 합 의 : 문화체육과, 교통지도과 협조
- 입법예고(2019. 8. 22. ~ 9. 11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김기영)

- 의안번호 제1561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19년 9월 19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9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,
-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,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시 자치구 현황 조사 결과 8개의 자치구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, 전국적으로도 경기도, 전라남도, 대구, 부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.

※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자 우대 현황

구분	구분	발급기준	예산	유효기간	혜택
1	강북	누적 200시간 이상 및 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	555만원	1년	○ 공공시설 주차요금, 관람료, 사용료, 수강료 등 감면 (20%)
2	강서	연간 50시간 이상 봉사자	210만원	2년	○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수강료 및 이용료 20%, ○ 강서구민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20%, ○ 체육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20%, 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20%(정기권제외), ○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50%, ○ 민간업소(자원봉사할인가맹점 88개소) 5~15% 할인 혜택 부여
3	관악	전년 36.5시간이상 봉사자	500만원	1년	○ 공공시설 주차요금, 사용료, 수강료 등 감면 (30%) ○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(공공기관 및 개인사업체 등) 5~30%의 할인 제공
4	서대문	발급일 기준 직전 1년간 봉사시간 50시간 이상	-	2년	○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할인가맹점 할인 혜택 제공(20%)

5	성 북	발급일 기준 직전 1년간 봉사시간 50시간 이상	20만원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북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일 최초 2시간 면제 ○ 성북구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
6	용 산	신청일 1년전 30시간 이상 봉사자에 봉사확인서 발급	-	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관 시설(시설관리공단 헬스시설) 이용 할인권 제공
7	은 평	봉사확인서 발급 (제한조건 없음)	-	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병원 본인부담금 10~20%할인(관내2개 업체) ○ 안경점 (2개 업체) 물품 10%할인 ○ 기독교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교육 및 자격증 과정 혜택 ○ 한국사이버대 수업료 50%할인
8	노 원	-	-	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, 관람료, 사용료, 수강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 사용 가능 (* 자원봉사 1시간 = 700NW)

○ 주요 내용은

- **안 제14조(자원봉사자 우대) 조항을 신설**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우대사항으로는 ①구에서 관리·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감면, ②할인가맹점에서의 상품가격 할인 등 크게 2가지를 규정하고 있음.

1) 관계법령 검토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서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” 고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”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

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**사용료**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, 같은 법 **제139조제1항**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**조례로 정한다**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**감면**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**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**에서 직접 사용료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 바,

- **안** 제14조제3항의 후단에서 “감면비율 및 적용기준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” 라고 규정하여 개별 조례의 규정을 통해 해당 사용료를 감면토록 한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안 제14조(자원봉사자 우대)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**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.**

- 본 개정안에서는 부칙을 통하여 타 개별조례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, **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** 등 정리적인 개정에는 보통 사용되는 방법임.¹⁾

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은 실제적인 내용이어서 다른 조례 개정의 한계를 넘을 우려가 있으나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부칙을 통한 개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.

- 또한, 실무적으로는 이 조례안과 부칙 제2조제2항의 조례안(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)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**사전 협의**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1) 법제처, 『자치법규 입안 매뉴얼』 p.235

2) 현황 및 타당성 검토

- 『2019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』(행정안전부)에서 제시한 자원봉사 인정 보상 기준과 우리구의 인정보상 기준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.

※ 자원봉사자 우대 현황

유형	행안부 지침	광진구
정서적 인정	감사·축하카드, 연하장, 문자 등 관심표현	상해보험 가입, 감사문자메시지 발송(명절등),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간담
사회적 인정	우수 자원봉사자 표창, 정부포상 추천 등	구민표창, 정부포상 추천, 추천서 제공 등 봉사활동 실적인증 등
상징적 인정	각종 기념품, 활동조끼, 자원봉사자 수첩 제공, 모범봉사자 선정 등	우수봉사자 인증서 수여 등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 등
기회의 인정	국내외 행사 참석 기회, 심화교육, 워크숍 참석기회 등	행사, 특강, 공연 등 초대,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
경제적 인정	할인가맹점 이용, 공공시설 및 복지관 이용료 할인 등	-

- 우리구는 행정안전부 기준 중에서 경제적 인정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실정으로,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※ 자원봉사자증 주요 혜택(안)

이용 시설	세부내용	할인율	비고
주민자치회관	-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- 타 할인과 중복 불가	20%	조례개정
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	- 시설 정기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(시설 대관이용료 제외) - 타 할인과 중복 불가	20%	규칙개정
공공시설 주차요금	-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(정기관 제외) - 타 할인과 중복 불가	30%	조례개정
관내 할인가맹점	- 관내 음식, 이미용업 등 업체 이용시 할인	5-20%	-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및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, 행정안전부 「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」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,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 및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